

공업배치법 시행규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공업배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한 사항과 동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공장대지면적등의 산정방법) ① 영 제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.

②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건축면적은 기계 또는 장치가 설치된 건축물 또는 사업장의 각종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. 다만, 법 제6조제1호, 법 제7조, 법 제9조제1항제2호, 법 제11조, 법 제12조 및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건축면적은 건축물 또는 사업장의 각종의 바닥 면적의 합계로 한다.

제3조(공장설치 신고서) ①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공장배치도
2. 공장대지지적도
3. 사업자등록증

제4조(공장설치신고사항의 변경)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“상공부령이 정하는 사항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공장의 소재지
2. 공장의 업종
3. 공장대지면적 또는 공장건축면적
4. 공장의 준공예정일

②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신고를 한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장설치변경신고서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·부산시장·도지사·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 또는 이리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(이하 “도지사 또는 관리소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(공장설치신고확인서)는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.

제6조(공장입지의 의견회시) 도지사 또는 관리소장이 영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입지에 관한 의견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그 의견을 주무부장관에게 회시하여야 한다.

제7조(입지변경 또는 시설설치의 권고등)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행한다.

② 법 제8조제2항의 “상공부령이 정하는 기간”은 20일로 한다.

③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변경등의 권고를 받은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권고의 응락여부를 도지사 또는 관리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도지사 또는 관리소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 응락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확인서를 그 통보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제8조(조정·변경명령서) ①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·변경 명령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.

② 도지사 또는 관리소장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변경의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불응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장의 설치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확인서의 기재내용에 반하여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).

제9조(기준초과용지의 매각통보서)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용지의 매각통보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.

제10조(공장의 신설·증설 또는 이전허가신청서) ①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신설·증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공장신설·증설허가신청서를, 공장의 이전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장이전허가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·부산시장 또는 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위치도(1 25,000도시계획도)
2. 공장배치도
3. 공장대지지적도
4. 사업자등록증
5. 이전전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공장 이전확인서(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공장의 이전의 경우에 한한다)

③ 도지사가 법 제13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신설·증설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공장신설·증설허가를, 공장의 이전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공장이전허가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④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허가신청서를 이전 후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1조(기존공장의 등록등) ① 법 제14조제 1 항의 “상공부령이 정하는 기간”은 6월로 한다.

② 법 제14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공장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.

③ 도지사가 법 제14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공장의 등록을 한 자에게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공장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
④ 도지사는 제 1 항의 등록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월내에 공장의 등록상황을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법 제14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.

제12조(공장의 이전명령서) 영 제24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명령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.

제13조(공업단지예정지지정신청서) ① 영 제27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예정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.

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예정지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공업단지조성기본계획서
2.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환경영향평가조서
3. 기상조사 및 수질조사(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)
4. 위치도(축적1/25,000지형도)
5. 공장배치도

③ 제 2 항제 1 호의 공업단지조성기본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공업단지조성의 기본계획개요

2. 공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(축적1/50,000도면을 첨부할 것)

3. 조성사업의 자금계획

4. 조성사업의 시행기간 및 연차별계획

④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예정지지정신청서는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법 제20조제 1 항 후단에서 “지정받은 사항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공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자의 명칭

2. 공업단지의 위치·범위 및 면적

3. 제 3 항제 3 호 및 제 4 호에 게기한 사항

제14조(공장이전신고서) ① 영 제30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.

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공장배치도

2. 제11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증

3. 이전전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공장이전확인서(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)

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신고서는 이 전후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도지사 또는 관리소장이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이전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공장이전신고확인서를 그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법 제25조제 1 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.

⑤ 법 제25조제 1 항의 후단에서 “상공부령이 정하는 사항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공장의 소재지

2. 공장의 업종

3. 공장대지면적 또는 공장건축면적

4. 공장의 준공예정일

5. 공장의 이전시기

제15조(공장건설 완료보고서) 법 제32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건설을 완료한 자는 별지제22호서식에 의한 공장건설완료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건축법상의 건축준공검사서

2. 공장배치도

제16조(검사원의 증표) 법 제32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